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편집인 : 공보관

731-6111~3

# 서울시보

제 1997 호 1996. 9. 25.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판	기 관 의 장

● 입 법 예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996-365 호 서울특별시조경관리조례안입법예고 ..... 3

● 고 시

제 1996-255 호 검사기관의지정기준및업무처리등에관한고시증개정 ..... 4

제 1996-257 호 공영노외주차장설치및사용개시 ..... 5

● 공 고

제 1996-351 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 ..... 5

제 1996-354 호 다단계판매업자휴업 ..... 5

제 1996-355 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 ..... 6

제 1996-359 호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변경(취소) ..... 6

제 1996-364 호 상품권발행폐지 ..... 7

(이면계속)

공											
합											

 서울특별시

1163

● 구 고 시

제 1996- 40 호 도시계획사업(사적동205~325-1간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종로) ..... 7

제 1996- 61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성동) ..... 10

제 1996- 8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성북) ..... 10

제 1996- 40 호 주택(재건축)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양천) ..... 12

제 1996- 44 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강서) ..... 12

제 1996- 45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강서) ..... 16

제 1996- 65 호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실시계획변경(구로) ..... 16

제 1996- 74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영등포) ..... 17

제 1996- 24 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수도)지적승인(송파) ..... 18

제 1996- 4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인가(강동) ..... 18

제 1996- 46 호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강동) ..... 19

● 구 공 고

제 1996-209 호 도림구역제19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를위한공람(종로) ..... 20

제 1996-200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중구) ..... 20

제 1996-223 호 도시계획(준주거지역,도시설계지구)결정지내건축허가제한(강북) ... 21

제 1996-21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서대문) ..... 21

제 1996-168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금천) ..... 22

제 1996-174 호 도시계획안공람(동작) ..... 22

제 1996-198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변경을위한공람(관악) ..... 23

제 1996-259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서초) ..... 24

제 1996-16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강동) ..... 24

● 사업소고시

제 1996- 92 호 토지점용승인(한강관리사업소) ..... 25

● 공 문 시 행

문물관리전환소요조회(공무원교육원) ..... 25

● 인 사 발 령

..... 26

● 기 타

정정제재 ..... 27

### 입 법 예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996-365호

##### 서울특별시조경관리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조경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9. 25

서울특별시장

#### 1. 제정취지

- 건물주변의 녹지확보를 위한 조경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녹지 조성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고,
- 주택가·도심 등 생활공간 내에 영구보존되어야 할 녹지가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주차장으로 무단용도변경하거나 훼손,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고 온전히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경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대지 안의 조경면적 및 식수 등 조경설치기준은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6조, 제17조를 준용토록 함.
- 나.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가지치기, 비료주기, 병충해방제 등 관리책임자의 관리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 다. 조경시설의 원상변경, 수목벌채 등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과 관리청의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손상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라. 수목·수림 중에서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보호수목 등의 지정과 소유자

의 의무를 규정함.

- 마. 재건축·재개발계획 승인시에 부대조건으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존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바. 가로수와 보호시설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제거 또는 이식하는 자에게 손상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사. 가로수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인근 공공기관·학교·단체·공장·주민들로 하여금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유지관리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시민관리제 실시 근거를 마련함.
- 아.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자. 생물타리조성,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등 공익적 기능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녹지자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차.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함.

####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시장(참조: 녹지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전화번호: 778-0688, FAX: 775-88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96-255호  
검사기관의지정기준및업무처리등에관한  
고시중개정고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 및 동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4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3항,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고시 제447호(93.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96. 9. 25

서울특별시장

제1조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 및 제36조, 동 시행령 제22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8조제2항,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 및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4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3항,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동 시행규칙 제14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8조제2항, 동 시행규칙 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31조제2항, 동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 및 상공자원부”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5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5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 및 통상산업부”로 하고, 동 조동항 제1호 중 “상공자원부”를 “통상산

업부”로 한다.

제3조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지정 신청서에 동 규칙 제38조제2항”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3항”으로 하고, 동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준에 적합한 지정신청자에게는 필요 시 검사장에 출장하여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조사서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제5항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이 지정의 취소를 받은 경우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제9조제1항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4항”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2”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21의2호”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별표25의1호”로 하고, 동 조동항 제2호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21의4호”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제2항 별표25의2호”로 한다.

제17조 중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4항 중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한다.

(별표)의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호 가

목 단서 중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한다.

(별표)의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사장비 및 시설 : 고압가스안전관리 법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별표 36에서 규정한 검사 장비 이상 확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의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6호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 26"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별표 36"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이 고시에 의해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고시제1996-257호

공영노외주차장설치및사용개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노외주차장을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 개시함을 고시합니다.

1996. 9. 25

서울특별시

가. 주차장명 : 영등포구청역 환승주차장  
나.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70

다. 주차규모 : 158대

라. 운영방법

(1) 운영시간 :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적용

(2) 주차요금 : 2급지 요금 적용

(3) 사용개시일 : 96. 9. 25(수)

(4) 관리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777-91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1996-351호

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9. 25

서울특별시

1. 상호 : (주)한국허벌라이프

2. 대표자 : 브라이언 케인

3.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6-1

변경 전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전화 : 733-1021

변경 후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6-1

-전화 : 3453-8213

4. 변경일자 : 96. 9

5. 변경사유 :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공고제1996-354호

다단계판매업자휴업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휴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p>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6. 9. 25 서울특별시</p> <p>1. 상호 : (주)헬퍼 2.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7-37 3. 대표자 : 김호진 4. 휴업일자 : 96. 9. 10~96. 12. 31 5. 휴업사유 : 경영부실</p> <p>●서울특별시공고제 1996-355호</p>		<p style="text-align: center;">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변경공고</p> <p>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6. 9. 25 서울특별시</p> <p>1. 상호 : (주)태길종합무역 2. 대표자 : 한상인</p>			
<p>3.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6-22</p>					
변 경 전		변 경 후			
<p>-상호 : 태길종합무역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6-22 -전화 : 501-5083 -대표이사 : 한상인 감 사 : 권옥희 이 사 : 김 성 이 사 : 심상용 -후원수당 : 소비자의 24.5%</p>		<p>-상호 : 선망산업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6-6 -전화 : 547-9978 -대표이사 : 조용희 감 사 : 신미영 이 사 : 정윤실 이 사 : 오경택 -후원수당 : 판매원의 26.5%</p>			
<p>4. 변경일자 : 1996. 9. 5. 변경사유 :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p> <p>●서울특별시공고제 1996-359호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변경(취소)</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에 대하여 95. 11. 20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재</p>		<p>결 주문내용으로 취소하였기 행정심판법 제37조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p> <p>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 계획과와 강동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6. 9. 25 서울특별시</p>			
<p>가.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변경(취소) 조서</p>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취소)	어린이공원	강동구 명일동 306-9 일대	661	0	
<p>나. 관계도면 : 생략(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시설계획과의 강동구 도시관리국 도</p>		<p>시계획과 비치 도면과 같음)</p>			

●서울특별시공고제1996-364호

상품권발행폐지공고

상품권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품권 발행 폐지를 공고합니다.

1996. 9. 25

서울특별시장

1. 상호 : (주)전영유통건설산업
2. 대표자 : 신호철
3.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06-1
4. 폐지상품권
  - 가. 인가일시 : 1994. 4. 11(재정경제원)
  - 나. 등록번호 : 제36호(서울특별시)
  - 다. 종류 : 제3자 발행형 상품권
    - 금액상품권 : 1,647,410천원(4종)
    - 물품상품권 : 9,790천원(5종)
5. 폐지사유 : 경영악화로 인한 상품권 폐지
6. 상품권 발행 폐지일 : 1996. 9. 6

나. 사업의 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의 명칭	사업의 규모	사업 시행자	비 고
종로구 사직동 164~311~10간	사직동 205~325-1 간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B=4~6m, L=380m(변경없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경없음)
- 라. 사업의 기간 : 95. 12. 15~97. 12. 14 (변경없음)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별첨 변경조서
-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주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변경조서

구 고 시

●종로구고시제1996-40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432호(63. 7. 1)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종로구고시 제1995-42호(95. 12. 15)로 실시계획 인가된 바 있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였기에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 9. 25

종로구청장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변경 인가

변경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당 초				변 경			
		지목	수용면적 (㎡)	소 유 자		지목	수용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종로구 사직동 158-1	대	1.3	신용운	종로구 관훈동 196-6	대	1.3	신광영	종로구 사직동 158
2	159-1	대	4.8	신용운	종로구 관훈동 196-6	대	4.8	신광영	종로구 사직동 158
3	175-3	대	6.8	박동구	종로구 사직동 175-3	대	6.8	박동구	종로구 사직동 175-3 (압류 종로구 언지동 1-30 종로구의료 보험조합)

변경물건조서

연번	물 건 소재지	당 초				변 경							
		물건 종류	구 조	수용면적 (㎡)	소 유 자		물건 종류	구 조	수용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사직동 158		누		락	건	물	슬래브/블록	2.3	신광영	사직동 158		
2	159	건	물	목조화집	6.7	신용운	관훈동 196-6	건	물	슬래브/블록	4.4	신광영	사직동 158
3	160	건	물	목조화집	3.6	이정호	누상동 36-3	건	물	슬레이트/블록	3.6	이정호	누상동 36-3 (근저당권 종로구 통인동 147-1 효자동새마을금고)
4	161-1,2 (화장실)	건	물	목조화집	1.6	백찬기	사직동 161-1	건	물	슬래브/블록	1.6	백찬기	사직동 161-1 (근저당권 충북 청주시 영동 86-3 충북은행)



연번	물건 소재지	당 초				변 경					
		물건 종류	구 조	수용면적 (㎡)	소 유 자		물건 종류	구 조	수용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5	사직동 194	건 물 영 업 권	슬래브/ 벽 돌	20.4 1식	정범구 사직동 194	건 물 영/업 권 대 문 계 단 및 2층 복도	슬래브/벽돌 (스메드상사) 재	20.4 1식 1식	정범구 사직동 194 (근저당권 중구 남대문로2가 9-6 국민은행 서소문지점, 중구 남대 문로2가 130 한일은행 서역삼지 점)		
6	335-2	건 물	목조와즙	0.5	라남선 종로구 사직동 335-2	건 물	목 조 와 즙	0.5	라남선 종로구 사직동 335-2 (근저당권 중구 충정로1가 75 농 업협동조합중앙회)		

변 경 영 업 권 조 서

연번	영업소재지	당 초				변 경			
		상 호 명	영업의 종 류	소 유 자		상 호 명	영업의 종 류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사직동 194	영비디오	대여업	정범구	사직동 194	영비디오점	대여업	김성래	사직동 194

30-9

제 1997 호

사

부

1996. 9. 25

●성동구고시제1996-61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 9. 25

성 동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우성연립 재건축조합
3. 민영주택 건설사업 개요
  - 가. 위치 : 서울 성수2가 609-2 의 5필지
  - 나. 대지면적 : 5,136.00㎡
  - 다. 건축연면적 : 20,046.21㎡
  - 라. 규모 : 아파트 19층 2개동 14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 18,177,304천원
5. 사업시행기간 : 1996. 9.~1999. 3.
6.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나. 사업시행내역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지	사업의 규모	비고
아리랑길 확장공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39-7 ~109-32	폭(B)=25~30m 연장(L)=300m	

- 다.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97. 12. 31까지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따로붙임

●성북구고시제1996-8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건설부고시 제198호(71. 4. 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308호(71. 6. 3)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5-323호(95. 12. 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1995-104호(96. 1. 4)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1996-26호(96. 4. 6)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된 "아리랑길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920-3405~8)와 건설관리과(920-3400~3)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9. 25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변경전 물건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정릉동 110-40	건물(1층)	슬래브 / 벽돌	20	전덕렬	정릉동 110-40
		건물(2층)	슬래브 / 벽돌	4		
2	966-95	건물(1층)	슬레이트 / 벽돌	22	홍성수 마포구 성산동 37-9	
3	110-5	건물(1층)	슬레이트 / 벽돌	97	남상용 정릉동 110-5	

## 변경후 물건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정릉동 110-40	건물(1층)	슬래브 / 벽돌	20	황옥희 서대문구 홍은동 71-700 풍림2차	④ 101-903
		건물(2층)	슬래브 / 벽돌	4	전진두 서대문구 홍은동 71-700 풍림2차	
2	966-95	건물(1층)	슬레이트 / 벽돌	22	홍성수 마포구 성산동 37-9	
					(전세권 은평구 구파발동 56-26 손점환)	
3	110-5	건물(1층)	슬레이트 / 벽돌	97	지동섭 정릉동 16-346	
					윤광한 정릉동 110-5	
				남상용 정릉동 110-5		

## 변경전 토지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정릉동 110-53	대	47	이언형	상월곡동 산 1

## 변경후 토지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정릉동 110-53	대	47	김창수	정릉동 110-46

●양천구고시제 1996-40호

주택(재건축)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33조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 9. 25

양천구청장

1. 사업명 : 주택(재건축)건설 사업
2. 사업주체 : 명신, 해동재건축 주택조합
3.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33-1

4. 사업규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위치	양천구 신월동 533-1 의 5	과 동	
대지면적	3,488.40㎡	과 동	
연면적	15,661.37㎡	과 동	
규모	지하 2층, 지상 14층, 1동 108세대	전용면적 및 세대별 면적 변경 없음	
변경사항	기초공법 변경 [MAT FDN(전면기초) → FLLE(파일)+MAT FDN(천면기초로 보강)]		

5. 사업시행기간 : 1995. 6~1997. 4.
6. 사업계획 승인일자 : 1995. 6. 26
7.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사항 등

-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 9. 25

강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강서구 화곡동 산 162-1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까치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라. 사업의 규모

- 공원조성 : 23,210㎡
- 시설내역 : 별첨(도면생략)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98.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소유자 및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주소

●강서구고시제 1996-44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  
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207호(91. 4. 19) 도시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151호(93. 5. 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 계획결정되어 강서구고시 제1993-49호(93. 6. 30)로 지적승인 및 강서구공고 제1996-112호(96. 8. 9)로 공람공고한 까치산 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 도시계획시설(가치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진 속 른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3,210	6,984	1	322	802	59	시설률 : 31.7% 건폐율 : 1.38%
조경 시설	490	490				3	
휴양 시설	545	460				1	40개소
유희 시설							
교양 시설	800	760	1	280	760		
편익 시설	122	90		42	42	2	
운동 시설	1,175	990					
관리 시설						53	
도로	도로	2,414					
및		(1,500)					
광장	광장	1,810					
녹지 및 기타		15,854					

● 시설조서

구 분	시설명	번호	위 치	부지면 적(㎡)	시설면 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 물 (기)	비 고
								바닥 면적	연 면적		
	합 계			23,210	6,984			322	802	59	시설률 : 31.7% 건폐율 : 1.38%
기 반 시 설	계			4,224	4,224						
	도 로			2,414	2,414						
	광 장 가		화곡동 산 164-3 입	1,810	1,810						
조 경 시 설	계			490	490					3	
	화 단 나 파 고 라	①	화곡동 산 164-3 입	290	290					3	
휴 양 시 설	계			545	460					1	
	간 이 다 휴식시설	다-1	3개소 화곡동 산 162-17 입	140	125						
				(40)	(35)						

구분	시설명	번호	위치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면적(m <sup>2</sup> )	구조	규모	건축물(m <sup>2</sup> )		공작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간이 휴식시설	다-2	화곡동 산 163-3 일 외 화곡동 산 163-3 일	(60)	(55)						
		정상부 휴식시설	라-1	2개소 화곡동 산 164-3 일 외	405	335					
		라-2	화곡동 산 144-37 일	(280)	(230)						
	장 의 자		시설지역			목재				1	40개소
운동시설	계			1,175	990						
	다목적 운동장	마	화곡동 산 164-3 일	1,175	990						
교양시설	계			800	760		1동	280	760		
	독서실	1	산 172-1 일	800	760	R.C	1동	280	760		
편익시설	계			122	90			42	42	2	
	팔각정	②	산 144-37 일	77	65			42	42	1	
	정자	③	산 164-3 일 외	45	25					1	기 존
관리시설	계									53	
	안내판		시설지역			스텐레스				2	
	표지판		시설지역			"				6	
	휴지통		시설지역			"				20	
가로등		시설지역			"				25		
녹지 및 기타				15,854							

● 도로조사

○ 공원조성계획 도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784.20	914				
신설	산책로		1	1.2	15	18	산책로	화곡동 산 164-3	화곡동 산 164-3	
"	"		2	1.2	92	110.4	"	화곡동 산 162-1	화곡동 산 163-3	
"	"		3	1.2	148	177.6	"	화곡동 산 162-1	화곡동 산 163-3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산책로		4	1.2	125	150	산책로	화곡동 산 163-3	화곡동 산 163-3	
"	"		5	1.2	30	36	부진입로	화곡동 산 163-3	화곡동 산 163-3	
"	"		6	1.2	37	44.4	산책로	화곡동 산 163-3	화곡동 산 172-2	
"	"		7	1.2	27.20	32.6	"	화곡동 산 172-2	화곡동 산 172-2	
"	"		8	1.2	25	30	부진입로	화곡동 산 172-2	화곡동 산 172-6	
"	"		9	1.2	52	62.4	산책로	화곡동 산 162-1	화곡동 산 162-18	
"	"		10	1.2	22	26.4	부진입로	화곡동 산 144-40	화곡동 산 144-40	
"	"		11	1.2	70	84	"	화곡동 산 144-37	화곡동 산 143-12	
"	"		12	1.2	37	44.4	산책로	화곡동 산 143-12	화곡동 산 144-39	
"	"		13	1.2	26	31.2	부진입로	화곡동 산 162-1	화곡동 산 162-1	
"	"		14	1.2	18	21.6	"	화곡동 산 164-3	화곡동 산 164-3	
"	"		15	5	9	45	주진입로	화곡동 산 164-3	화곡동 산 164-3	

○ 도시계획 도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기존	대로	2류	1	30	50	1,500		화곡동 산 172-2	화곡동 산 172-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소재지

연번	동 별	지 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계				23,210		
1	화곡동	산 143-12	임야	1,190	서울특별시	
2	"	산 144-37	"	893	"	
3	"	산 144-38	"	99	안운선 양천구 신월동 936-7	
4	"	산 144-39	"	297	이찬일 서대문구 홍제4동 13-36	
5	"	산 144-40	"	1,190	김은순 관악구 봉천동 1592-11	
6	"	산 162-1	"	2,38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7	"	산 162-17	"	1,785	국(재무부)	
8	"	산 162-18	"	2,182	"	
9	"	산 163-3	"	4,165	서울특별시	
10	"	산 164-3	"	6,645	국(경찰청)	
11	"	산 172-1	"	595	전덕수 외 1인 화곡동 382-6	
12	"	산 172-2	"	1,587	서울특별시	
13	"	산 172-6	도로	202	"	

●강서구고시제 1996-4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 강서구 염창동 255 외 6필지상 해촌연립 재건축주택조합 대표 이강익이 시행하는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 제33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주택과(600-6380~3)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1996. 9. 25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명 : 강서구 염창동 255 외 6필지 (재건축) 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성명 : 해촌연립재건축주택조합 대표 조합장 이강익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56 라동 206

다. 사업시행개요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55 외 6필지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주차장정비, 3종미관지구

- 대지면적 : 8,510.30㎡
- 건축면적 : 36,819.71㎡
- 건축면적 : 2,027.16㎡
- 전폐율 : 23.82%
- 용적률 : 312.65%
- 사업규모 : 지하 2층 지상 18층 아파트 5개동 27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라. 사업시행기간 : 1996. 10.~1998. 9.

마.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 사항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 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제4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6	국지 도로	104	염창동 284-37	염창동 284-36	일반 도로		
변경 (폐지)	소로	3		6	국지 도로	0	염창동 284-37	염창동 284-36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6	국지 도로	66	염창동 284-50	염창동 114-1	일반 도로		

※ 관련도면은 강서구청 공동주택과 및 도시계획과에 비치되어 있음.

●구로구고시제 1996-65호



<p><b>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실시계획 변경인가</b></p> <p>본 시설은 건설부고시 제73호(87. 3. 9)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하고, 서울시고시 제206호(87. 3. 30)로 유통업무설비 지적승인되고, 서울시고시 제945호(88. 12. 5)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된 다음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0호 및 서울특별시 행정관한위임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6. 9. 25 구로구청장</p>	<p>가.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5-8 일대</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서울중앙기계부품상가 신축</p> <p>다. 사업시행 규모: "마"함 금회 변경내용 참조</p> <p>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25-1 서울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 이사장 김대환</p> <p>마. 금회 변경내용: 별첨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실시계획 변경현황</p> <p>바. 기타사항: 변경 없음</p>
--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실시계획 변경현황

시설명	위치	세부시설명 (㎡)			비고	
		구분	변경전	변경후		
서울중앙기계부품상가	구로구 구로동 635-8 외 65필지	건축면적	34,194.42	34,194.42		
		계	308,702.89	308,702.89		
		건물연면적	판매시설	92,520.18	92,520.18	
			사무실	37,647.35	37,647.35	
			편익시설	17,026.88	17,026.88	
			주차장	142,937.88	142,937.88	
			기계 및 전기실	3,968.45	3,968.45	
			창고 및 조작장	14,602.15	14,602.15	
		조경면적	계	12,993.61	13,351.61	증 358.00
			지상	10,641.61	10,642.61	증 1.00
옥상	2,352.00		2,709.00	증 357.00		

<p>●영등포구고시제 1996-74호</p> <p>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p> <p>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이를 동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6. 9. 25</p>	<p style="text-align: right;">영등포구청장</p> <p>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p> <p>2. 사업주체: 한국보훈복지공단 사장 최태호</p> <p>—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99</p>
--	--

<b>3. 사업 변경 사항</b>			
대 지 위 치	영등포구 신길동 산 165-3 외 28필지		
사 업 주 체	한국보훈복지공단 사장 최 태 호		
<b>변 경 사 항</b>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사 변 유
대 지 면 적	18,945.6㎡	18,707.59㎡	238.01㎡ 감소(상가지분·면적 감소)
연 면 적	58,477.8㎡	57,972.81㎡	504.99㎡ 감소(상가 연면적 감소)
건 패 율	20.69%	19.44%	1.25% 감소
용 적 륜	241.38%	243.02%	
조 경 면 적	5,362.64㎡	5,312.76㎡	49.88㎡ 감소(대지면적 감소)
상 가 층 수	지하 1, 지상 3층	지하 1, 지상 4층	
상 가 주 차	19대	14대	5대 감소(상가면적 감소)
<b>상가 평면조정 및 위치변경</b>			
<p>●송파구고시제 1996-24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수도)지적승인 및고시</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14호(96. 7. 3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26호(96. 8. 8)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및 서울특별시행정편찬위원회규칙 제3조 규정</p>		<p>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410-3385~8) 민원봉사실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6. 9. 25 송 파 구 청 장</p>	
가.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지적승인 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공용의 청사	송파구 문정동 418 일대	27,758	
나. 도시계획시설(수도) 지적승인 조서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비 고
수 도	송파구 풍납동 419 일대	10,184.2	한강 하류 수원지 취수장 [ 서울특별시 : 3,268㎡ 인천광역시 : 6,916.2㎡
다. 도면 : 생략(송파구 도시계획과 및 민원봉사실 비치도면과 같음)		도시계획사업(도로건설)실시계획 인가고시	
●강동구고시제 1996-44호		1. 강동구공고 제1996-143호(1996. 8. 20)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바	

있는 강동구 천호동 121-40~148-9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2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건설관리과, 도로과에 비치하고 토지,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480-1405~8).  
 1996. 9. 25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천호동 121-40~148-9간  
 나. 사업명: 천호동 121-40~148간 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도로개설(일반도로)  
 B=8m, L=20m  
 라. 사업시행자: 강동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연월일: 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별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별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148-9	임	63	63	주순목 중구 충무로4가 125-1	
					박근심 성동구 옥수동 220-1 한남하이츠㉔	1-901
					김수지 성동구 옥수동 220-1 한남하이츠㉔	1-901
					김수연 성동구 옥수동 220-1 한남하이츠㉔	1-901
					김장연 성동구 옥수동 220-1 한남하이츠㉔	1-901
2	121-131	도			강동구	

●강동구고시제1996-4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및고시

1.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1996-27호(96. 6. 20)로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되어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강동구청 도시계획과(480-1385~7) 및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6. 9. 25  
 강 동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면적(㎡)	위치	비고
기장	공원(근린공원)	8,928.8	강동구 성내동 533 일대	면적증감없이
변경	공원(근린공원)	8,928.8	강동구 성내동 533 일대	위치 조정

나. 관련도면 :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및 민원봉사과 비치도면과 같음(도면생략).

구 공 고

●종로구공고제 1996-209호

도림구역제19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  
인가를위한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723호(85. 10. 26)로 재개발사업 인가되고 같은 고시 제1994-350호(94. 10. 25)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된 도림구역 제19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벽산개발(주) 관리인 김희근 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며,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996. 9. 25

종로구청장

가. 사업의 명칭 : 도림구역 제19지구 재개발사업

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및 시행자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5-11 벽산개발(주) 관리인 김희근

다. 층수 : 지상 12층, 지하 5층(주된 용도 : 업무, 판매)

라. 공람내용(변경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 행 기 간	85. 10. 26~96. 10. 25	85. 10. 26~99. 10. 25	기간연장
시 행 자 주 소	부산직할시 중구 중앙동4가 81-11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45-11	주소변경
기 타	변 경 없 음		

마. 변경사유 : 토지소유자와의 매입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업시행기간 연장 및 시행자주소 변경

바. 공람기간 : 96. 9. 20~96. 10. 21(30일간)

사.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731-0385)

●중구공고제 1996-200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4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양도인가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1996. 9. 25

중구청장

양 도 인 가 일	96. 9. 16		
업종 및 면허번호	의장사업 94 서울 01-16		
구 분	양 도 자	양 수 자	
대 표 자	이 형 달	엄 용 열	
상 호	(주)삼원건설	(주)스프링	

영 업 소 재 지	중구 수표동 35-10	서울 강남구 포이동 259-1
도급 한도액 (원)	200,000천원	287,825천원

●강북구공고제1996-223호

강북구도시계획(준주거지역,도시설계 지구)결정지내건축허가제한공고  
 건축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결정지 내의 건축허가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 9. 25

강 북 구 청 장

1. 제한 목적 : 도시계획결정지(준주거지역, 도시설계지구) 내의 원할한 도시설계를 추진코자 건축허가를 제한
2. 제한 기간 : 96. 9. 17~97. 7. 4(다단 제한기한 내에 도시설계 확정공고된 경우에는 확정공고일까지로 한다.)
3. 제한 대상 :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 다만, 아래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구청장이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건축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입안목적이나 도시계획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나.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다. 대수선에 관한 사항
4. 제한 구역 : 1개소(수유동 277 일대) 51, 500m(4.19사거리 생활권 중심)

나. 공람개요

사업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규모	사업 시행자	사업기간	시설결정	지적고시
홍제동 306-8 ~314-8간	도시계획사업 (도로)	B=6m L=80m	서대문구청장	96. 9~ 97. 12. 31	서울특별시 고시 제106호 (74. 8.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06호 (74. 8. 1)

도면 생략(강북구청 건축과 및 도시정비과 비치도면 참조)

●서대문구공고제1996-21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06호(74. 8. 1)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서대문구 "홍제동 306-8~312-144간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공람 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9. 25

서 대 문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1996. 9. 21~1996. 10. 4 (14일간)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p>명세 : 별첨(생략) 라. 위치도 : 별첨(생략)</p> <p>●금천구공고제1996-168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p>	<p>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기에 동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6. 9. 25 금 천 구 청 장</p>
--	--

인가 일자	양도업종 및 번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1996. 9. 13	설비 94-서울-12-82	경신포이 프상사	금천구 시흥동 984 유통상가 15-102	김용걸	삼보냉열 (주)	금천구 시흥동 984 유통상가 11-230	조진택

<p>●동작구공고제1996-174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p> <p>우리 구에서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6. 9. 25 동 작 구 청 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람기간 : 1996. 9. 19~1996. 10. 4(14일간)</li> <li>2.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과(820-1385~7)</li> <li>3. 관련도서 : 공람장소 비치</li> <li>4. 기타 :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ol>
---	---

5. 도시계획(안) 조서

①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안) 조서

구 분	위 치	입 안 내 역		비 고
		구 역	면 적	
신길생활권중심	동작구 신대방동 377 일대 및 대방동 417 일대	상세계획구역	103,200 (㎡)	보라매 역세권 (지하철 7호선)

②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안) 조서

연번	위 치	노 선 명	지구변경내역		비 고
			기정	변경	
1	노량진삼거리~장승백이, 남부세무서~상도터널 입구	상도동길	4종 미관	5종 미관	도면 및 기타변동 사항 없음
2	노량진수원지~봉천동(구계)	관악로	·	·	·

연번	위 치	노 선 명	지구변경내역		비 고
			기정	변경	
3	승실대~사당동(남성사거리)	사당로	4중 미관	5중 미관	도면 및 기타변동 사항 없음
4	신대방삼거리~신림동(구제)	신림로	"	"	

③ 도시계획시설(시장, 주차장, 공원)변경(안) 조서

연번	구분	시 설 명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1	기정	시 장		노량진동 312-6	3,033	삼거리 시장
	변경	시 장		노량진동 312-6 외 4필지	3,882	시장시설 확충부 지(중) 849㎡
2	기정	사회복지시설		사당동 산 32-62	504	
	변경	주 차 장		사당동 산 32-62	504	시설명 변경
3	기정	공 원	보라매공원	신대방동 472 일대	420,724	
	변경	"	"	신대방동 472 일대(중 : 신대방동 산 170-2 외 2 필지)	421,623	(중 : 899㎡)

④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및 변경(안) 조서

연번	구분	규 모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유별	폭원					
1	신설	소로	3	6m	국지도로	50	상도동 25-28	상도동 25-22	일반도로
2	기정	소로	3	6m	"	274	대방동 32-1	대방동 17-30	"
	변경	소로	3	6m	"	256	"	"	도로선 형변경

●관악구공고제 1996-198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변경을위한  
공람공고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을 청취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  
여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1996. 9. 25

관 악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서울대학교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
2.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  
1 일대

3. 사용내용

- 가. 중축사항: 정전가속기동
- 나. 용도: 교육연구시설
- 다. 규모

중축동명	정전가속기동
규모: 총수 (연면적㎡)	2/1층 (1,528.98)

4. 시행자

- 가.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 나. 성명: 서울대학교 총장
5. 공람기간: 1996. 9. 20~1996. 10. 4(14

<p><b>일간)</b>                  ※ 관제도는 관악구청 건축과(880-3390 ~3)에 비치하고 있으니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은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공고제1996-259호</p>	<p style="text-align: center;"><b>전문건설업양도인가</b></p> <p>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6. 9. 25 서 초 구 청 장</p>
---	---

인가 일자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96. 9	의장 91-서울-01-250	(주)티도엔 터프라이즈	양재동 290-6	이재현	(주) 이도씨이	강남구 삼성동 109-1	정 철

**●강동구공고제1996-16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0-304호(90. 10. 31)로 시설결정되고, 강동구고시 제1990-30호(90. 11. 12)로 지적 승인된 강동구 천호동 423-56~423-55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인가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토지,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형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3. 관제도는 강동구청 건설관리과,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따른 의견서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6. 9. 25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동구 천호동 423-55~423-56  
 나. 사업명 : 천호동 423-56~423-55간 도로개설공사(일반도로)  
 다. 사업규모  
     도로개설 폭 4m, 연장 14m  
 라.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공람장소 : 강동구청 건설관리과 및 도로과(480-1400~8)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 조사 : 별첨

수용 및 사용 토지조사

연번	소재지번	지적(㎡)		지목	소 유 자	
		공부	편입		성명	주 소
1	천호동 423-55	399	42	도	이옥임	강동구 성내동 47-9
2	천호동 423-56	93	24	대	이병완	강동구 천호동 438-29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구조 및 규격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 소
1	423-56	대	시멘트블록조(건물)	13	이병완 강동구 천호동 438-29	
			시멘트블록조(화장실)	2		
			담장(H=2m, L=3m)	1식		
			철대문(H=1.8m, B=1.2m)	1식		

사업소고시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 1996-92호  
토지점용승인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6. 9. 25  
한강관리사업소장

허가 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	점용 목적	점용 기간	허가를 받은 자	
						성명	주 소
1996. 9. 17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04-6선	하천	924㎡	지장물 확 인 공사	96. 9. 18~ 96. 10. 7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희 서울시 중구 예장동 6-7	

공문시행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583-4104)  
문서번호 서무 22102-686  
시행일자 1996. 9. 25  
수 신 전기관  
제 목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요조회하니 희망기관(부서)에서는 게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전환 요청하기 바라며,  
2. 위 기간 내에 요청이 없을 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

- 우리 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89, 제17회 밀라노 트리엔날레 서울 전시관에 출품한 조형물 및 영사기기를 서울특별시물품관리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 전환 소

관리 전환대상 물품내역				
○ 전시장치물				
품명(물품분류번호)	규격	수량	취득일	상태
채색음각목판	수선전도	88조각	89. 11. 28	중고
에칭글라스(2박스)		7장	89. 11. 28	중고
도자기(모조품)	청자색	1점	89. 11. 28	중고
금관(모조품)		1개	89. 11. 28	중고
종이부조 회화		3박스	89. 11. 28	중고
목각 및 기타		1박스	89. 11. 28	중고
철제 받침대		1박스	89. 11. 28	중고
목조구조물	63cm×63cm×300cm	10개	89. 11. 28	중고
카펫트(7220-002)		10점	89. 11. 28	중고
○ 영상장치물				
품명(물품분류번호)	규격	수량	취득일	상태
슬라이드	Project Type J S-AV2,050, Kodak	6조	89. 11. 28	중고
렌즈	36mm, f/2.8 S-AV2,000 Kodak	5개	89. 11. 28	중고
앰프(7730-004)	220V/360W, Su-700 Matsushita	1대	89. 11. 28	중고
스피커	Impedance 40옴, Boss 101	4대	89. 11. 28	중고
카세트 테크	220V/45W, TASCAM 133	1대	89. 11. 28	중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b>인사발령</b> </div> <p style="text-align: center;">기능직 공무원 휴직</p> <p>발령 제551호(1996. 9. 16)</p> <p>중앙하수처리사업소 지방기계장 6등급 안상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규직을 명함(96. 9. 16~97. 9. 9)</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기능직공무원 면직</p> <p>발령 제552호(1996. 9. 16)</p> <p>건설안전관리본부 지방방호원 10등급 이 주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6급 공무원 파견(연장)</p> <p>발령 제554호(1996. 9. 14)</p> <p>내무국 지방행정주사 변동열 서울창업보 육센터 파견근무를 명함(96. 9. 15~97. 9. 14)</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명예퇴직자 특별승진 및 면직</p> <p>발령 제555호(1996. 9. 18)</p> <p>지적과 지방시설서기관 김복진 지방공무 원법 제39조의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 여 지방시설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기능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556호(1996. 9. 11)  
 남지하수처리사업소 지방기계원 7등급  
 (영사) 김성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조무원 10등급(검  
 찰) 이성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557호(1996. 9. 17)  
 소방본부 지방기계원 9등급 박인복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4급 기술직공무원 파견  
 발령 제558호(1996. 10. 1)  
 문화국 지방시설서기관 문승국 TOKYO  
 『서울사무소장』 파견 근무를 명함(96. 10.  
 1~97. 1. 31)  
 서울특별시

기 타

정정개재

1. 서울특별시보 제1996호(96. 9. 20일자)  
 에 게재된 성동구고시 제1996-60호 옥수  
 제9주백개량재개발구역내 수용할 토지·건  
 축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내용  
 중 아래와 같이 오류가 있어 바로 잡습니  
 다.  
 1996. 9. 25  
 성 동 구 청 장

가. 정정 내용

구분	면 적	편입면적	비 고
오	35.67㎡	35.67㎡	시보 72-38쪽
정	351.67㎡	351.67㎡	면번 8항

2. 서울시보 제1996호(1996. 9. 20일자) 중  
 구고시 제1996-38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의 토지조서 및 건물조서가  
 누락되어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1996. 9. 25  
 중 구 청 장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수용할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신당동 294-3	대지	90	5	최진호	중구 신당동 294-67
2	294-22	"	17	8	재무부	
3	294-67	대지	247	34	최경희	중구 신당동 294-67 (근처당권설정 삼성생명 을지로지점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150)
4	294-73	"	132	11	재무부	
5	294-78	"	165	8	재무부	
6	294-97	"	86	28	재무부	
7	294-73	"	43	11	재무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수용할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8	신당동 294-107	대지	92	6	정명렬	중구 신당동 366-1 (암류 서울특별시)
9	294-107	"	92	4	정명렬	중구 신당동 366-1 (암류 서울특별시)
10	311-12	"	156	3	김철규	전주시 덕진구 자복동 1060-8 현대④ 606 (근저당권설정 신일상호신용금고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1가 44-1)
11	321-15	도로	26	7	재무부	
12	321-27	대지	243	42	윤재립	중구 신당동 321-27
13	321-32	"	110	9	전차진	중구 신당동 40-119 (근저당설정 동일광학(주) 성남시 상대원동 369 -3)
14	321-36	"	46	.5	김기남	중구 신당동 321-37
15	321-37	"	83	1	김영식	중구 신당동 321-37
16	321-65	"	40	5	장영남	중구 신당동 321-65
17	321-107	"	10	2	재무부	
18	321-108	"	129	19	유상일	중구 신당동 321-108
19	321-124	"	3	2	국세청	
20	324-1	"	228	18	서원식 외 1인	서대문구 서촌동 1335 무지개④ 8-801
21	311-14	대지	93	34	권필선	중구 신당동 311-14
22	313-66	"	36	2	재무부	
23	313-81	"	13	5	전성준	중구 신당동 313-68
24	313-128	도로	8	3	김교원	중구 신당동 313-70
25	316-15	대지	8	6	건설부	
26	317-6	"	57	15	김학진	중구 신당동 317-6
27	317-7	"	119	3	이휘남	중구 신당동 317-7
28	317-9	"	240	7	박영백	중구 신당동 317-9
29	317-11	"	152	3	이종열	중구 신당동 317-11
30	321-14	대지	40	3	전윤식 외 1인	중구 신당동 321-14
31	324-2	"	182	10	이금숙	중구 신당동 324-2
32	324-3	"	159	2	재무부	
33	324-5	"	189	7	신당4동새마을금고	중구 신당동 324-5
34	321-106	"	87	19	윤영식	중구 신당동 321-106
35	326-1	"	46	1	오량균	중구 신당동 326-1

진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 용 합 면적(m <sup>2</sup>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신당동 294-107	점 포	목조와즙	18	정명열	중구 신당동 366-1 (압류 서울특별시)	
2	294-73	"	"	6	김기남	중구 신당동 294-73	2층 건물
3	"	"	슬레이트 / 불 록	1	김기남	중구 신당동 294-73	
4	"	"	목조와즙	8	장인순	중구 신당동 321-59	2층 건물
5	294-78	"	슬레이트 / 벽 돌	14	김길호	중구 신당동 321-78	"
6	294-98	"	목조와즙	20	홍원표	중구 신당동 321-37	"
7	294-97	"	슬레이트 / 불 록	42	황희복	중구 신당동 294-97	"
8	294-67	근 생	벽돌기와	18	최경희	중구 신당동 511-12 (근저당권설정 중구 태평로2가 150 삼성생명(주))	"
9		"	"	30	"	"	3층 건물
10	294-3	"	목조와즙	18	최진호	중구 신당동 294-67	
11	320-8	주 택	슬래브/ 벽 돌	1	오경숙	중구 신당동 320-8 (근저당 및 전세권설정 송과구 잠실동 44 ④ 412-107 나경수)	
12	320-5	주 택 및 근 생	슬래브/ 철 근 조	2	차형수	중구 신당동 320-5	
13	317-8	주 택	시멘트와즙	3	이운정	서대문구 홍은동 11-55 (근저당권설정 신당4동새마을금고 중 구 태평로2가 120 신한은행)	
14	317-7	주 택 및 근 생	슬래브/ 철 근 조	6	이희남	중구 신당동 317-7	3층 건물
15	317-6	"	슬래브/ 벽 돌 조	12	김학진	중구 신당동 317-6	2층 건물
16	316-14	"	슬래브/ 철 근 조	2	전선태	중구 신당동 316-14	
17	316-8	주 택	슬레이트 / 불 록	6	윤국선	중구 신당동 316-9	
18	316-7	"	"	10	유재덕	중구 신당동 316-7	
19	316-6	점 포	목조기와	8	김명기	중구 신당동 316-6	

일련 번호	소재지 번호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용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20	신당동 316-5	주택	목조도단층	16	최기순	중구 신당동 328-141	
21	315-1	주택 및 점포	시멘트 블록조	56	김기순	중구 신당동 315-1	1층 : 22 2층 : 19 3층 : 15
22	315-2	점포	목조와즙	18	김재현	중구 신당동 315-2	
23	315-3	"	목조와즙	18	최규환	중구 신당동 315-3	
24	315-4	"	"	3	유재천	중구 신당동 315-4	
25	"	화장실	"	4	"	"	
26	313-71	"	"	1	유양희	서대문구 불광동 238-7 불광 빌라	
27	313-68	주택 및 점포	"	3	박경숙	중구 신당동 313-68	
28	40-692	"	"	5	김정자	중구 신당동 40-211	
29	324-1	근생 및 주택	연와조/ 슬래브	3	서원석	외 1인 중구 신당동 324-2	
30	324-1	가건물	슬레이트 / 목조	11	서원석	외 1인 중구 신당동 324-2	
31	321-14	주택	시멘트와즙	2	전윤식	중구 신당동 32-14	
32	321-27	가건물	새시	9	윤재범	중구 신당동 321-27	
33	321-16	점포	슬레이트 / 불록	3	황치정	중구 신당동 333-537	
34	"	가건물	새시	4	"	"	
35	321-108	가건물	슬레이트 / 불록	2	유상일	중구 신당동 321-108	
36	"	점포	시멘트블록	22	"	"	
37	"	주택	"	3	"	"	
38	신당동 321-107	화장실	슬레이트 / 불록	1	윤영식	중구 신당동 321-106	
39	321-106	주택 및 점포	시멘트/ 평육개	17	"	"	
40	321-65	점포	목조와즙	13	장영남	동대문구 답십리동 907-2	
41	321-66	"	"	27	안일평	중구 신당동 321-66	